

# 어린이 기호식품 구매부추김 광고 제한 가이드라인

2021. 12.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식품 소비 안전 국  
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

# 목 차

1. 배경 .....	1
2. 법적 근거 .....	1
3. 대상 식품 .....	2
4. 대상자 .....	4
5. 대상 매체 .....	5
6. 구매부추김 광고 적용 기준 .....	5
7. 위반행위 확인에 따른 과태료 부과 .....	7
8. 관리 방법 .....	7
【붙임 1】 구매부추김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.....	8
【붙임 2】 구매부추김 광고 판별을 위한 흐름도 .....	9

이 가이드라인은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10조제1항의 어린이 구매부추김 광고 제한과 관련하여 영업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본 가이드라인은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광고 방향 제시를 위하여 기술된 것으로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,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또한,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

※ 본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전화번호: 043-719-2263

# 1

## 배경

- 어린이들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광고행위에 대한 기준 명확화
  - 변화하는 식생활 환경에서 구매부추김 광고금지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제시로 규제의 투명성 확보

# 2

## 법적 근거

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

제10조(광고의 제한·금지 등) ①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·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제조·가공·수입·유통·판매하는 자는 방송,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\* “어린이” 정의(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조)

학교의 학생(초·중·고등학교, 특수학교) 또는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(18세 미만)

※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10조제1항 제정 취지

○ 어린이가 스스로 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

- 어린이들이 식품을 선택할 때 식품 자체 외에 다른 요인으로 식품을 선택하는 것을 방지하고, 건전하고 안전한 판매 환경 조성

○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 유도로 어린이 건강 증진

- 분별력이 부족한 어린이의 무분별한 구매 및 필요 이상의 식품 섭취로 인한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 초래를 방지하기 위함

### 3

## 대상 식품

### ☞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

#### ○ 어린이 기호식품

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

제2조(정의) 2. "어린이 기호식품"이란 「식품위생법」 또는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.

- 범위: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」 [별표 1]

	가공식품	조리식품
범 위	「식품위생법」 제7조제1항 및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준·규격이 고시된 식품	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소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식품
종 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과자류 중 과자(한과류 제외), 캔디류</li> <li>- 빵류</li> <li>- 초콜릿류</li> <li>-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, 발효유류 (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 제외)</li> <li>-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</li> <li>- 면류(용기면만 해당)</li> <li>- 음료류 중 과·채주스, 과·채음료, 탄산음료, 유산균음료, 혼합음료(주로 성인이 마시는 음료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탄산음료 및 혼합음료는 제외)</li> <li>-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, 햄버거, 샌드위치</li> <li>- 빙과류 중 빙과 및 아이스크림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과·제빵류</li> <li>- 아이스크림류</li> <li>- 햄버거, 피자</li> <li>-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라면, 떡볶이, 꼬치류, 어묵, 튀김류, 만두류, 핫도그</li> </ul>

○ 고열량·저영양 식품

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

제2조(정의) 5. “고열량·저영양 식품”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(營養價)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한다.

- 범위: 「고열량·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」 [별표 1]

	간식용	식사대용
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가공식품: 과자류 중 과자(한과류는 제외한다)/캔디류/빙과류, 빵류, 초콜릿류,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/발효유류(발효 버터유 및 발효유분말은 제외한다)/아이스 크림류,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, 음료류 중 과·채음료/탄산음료/유산균 음료/혼합음료</li> <li>- 조리식품: 제과·제빵류 및 아이스크림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가공식품: 면류(용기면만 해당한다) 중 유탄면류/국수,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/햄버거/샌드위치</li> <li>- 조리식품: 햄버거, 피자</li> </ul>
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250kcal를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</li> <li>- 1회 섭취참고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</li> <li>- 1회 섭취참고량당 당류 17g을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</li> <li>- 1)부터 3)까지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식품 중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거나 포화지방 8g을 초과하거나 당류 34g을 초과하는 식품</li> </ul> <p>※ 단, 1회 섭취참고량이 30g 미만인 식품(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에 따른 양갱·푸딩을 제외한 캔디류, 초콜릿가공품을 제외한 초콜릿류, 과자 중 강냉이·팥콘에 한함)의 경우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고 단백질 9g 미만인 식품</li> <li>-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고 나트륨 600mg을 초과하는 식품. 다만, 면류(용기면만 해당한다) 중 유탄면류/국수는 나트륨 1000mg을 적용한다.</li> <li>- 1회 섭취참고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단백질 9g 미만인 식품</li> <li>- 1회 섭취참고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, 나트륨 600mg을 초과하는 식품. 다만, 면류(용기면만 해당한다) 중 유탄면류/국수는 나트륨 1000mg을 적용한다.</li> </ul>

	간식용	식사대용
	에는 30g으로 환산하여 적용하여야 하며, 그 외 총 내용량이 1회 섭취참고량보다 적은 식품의 경우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적용한다.	- 1)부터 4)까지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식품 중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1000kcal 초과하거나 포화지방 8g을 초과하는 식품


### ○ 고카페인 함유 식품

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

제2조(정의) 6. “고카페인 함유 식품”이란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표시기준에 따라 **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된 식품**을 말한다.

- 범위: 1ml당 0.15mg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 등  
(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[별표 2])

## 4 대상자

 **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제조·가공·수입·유통·판매하는 자**

- 어린이 기호식품을 한 가지 품목 이상 취급하는 자
- 고열량·저영양 식품 등을 제조·가공·수입·유통·판매하는 자로 방송, 라디오, 인터넷에 광고를 행한 주체

제조·가공	식품제조가공업,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 등
수입	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
유통·판매	식품판매업(식품자동판매기영업, 유통전문판매업, 기타 식품판매업) 등 관련 사업자 등록을 한 자

## 5

### 대상 매체

☞ ①방송, ②라디오, ③인터넷

① 방송: 지상파(중앙·지방), 종합유선(케이블TV)방송 등

② 라디오방송: 음성·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

③ 인터넷

- (형태) 홈페이지, 앱(애플리케이션), SNS 등

- (방법) 프로모션, 이벤트, 새소식, 홍보자료, 배너 광고, 팝업창 광고 등  
모든 광고

## 6

### 구매부추김 광고 적용 기준

☞ ①**식품이 아닌** ②**장난감이나** ③**그 밖에 어린이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** ④**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** ⑤**광고**

① 식품

- 식품, 식품만 구매·교환 가능한 상품권·시식권(식품 추가 증정 또는 용량 업그레이드 등의 행위도 포함) 등

② 장난감: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여러 가지 물건

- 일반적으로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할 용도(정상적인 사용의 경우 뿐 아니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도 내포)로 고안되었거나, 명백히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재질.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교구를 포함



### ③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

- 고열량·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구매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광고는 제외
- 광고에 직접 구매사항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구매\*해야만 행사에 응모하여 경품\*\*을 받을 수 있다면 어린이 구매를 부추기는 것으로 봄
  - \* SNS에 제품 사진 인증, 구매 후기 작성 등 사실상 제품을 구매하여야 행사에 참여 가능한 경우
  - \*\* (광고 예시) 제품 포장지(제품 겉면, 내면 포함) QR코드 등을 이용하여 경품행사 참여 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는 광고, 제품 내 스크래치 복권의 당첨 결과 또는 스티커, 카드, 그림엽서 등을 활용하여 추첨 등으로 경품을 제공한다는 광고 등
- 물건은 일정 형태를 갖춘 모든 물질\* 또는 재화적 성격을 가지는 무형 상품\*\*을 통칭함
  - \* 현금카드, 도서상품권, 연예인 브로마이드, 콘서트 입장권 등
  - \*\* 마일리지, 포인트, 게임머니, 기프트콘 등

### ④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

- '무료'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함
  - \* 특정 가격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

### ⑤ 광고

-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·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구매 시 장난감 등 어린이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모든 방송, 라디오, 인터넷 광고 대상으로 적용

※ '광고'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의도적인 활동을 의미함

## 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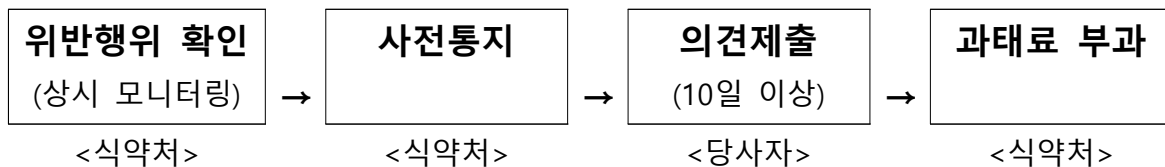
### 위반행위 확인에 따른 과태료 부과
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및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에 따른 과태료 부과

광고 매체	과태료(만원)		
	1차	2차	3차 이상
방송	1,000	1,000	1,000
라디오	300	600	900
인터넷	500	700	900

\* 과태료 근거: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」 제24조(별표 2)

- 과태료 부과 절차(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 및 제17조)



## 8

### 관리 방법

- 방송, 라디오, 인터넷 상시 모니터링
  - ‘위반행위 확인 시’ 과태료 부과 등 진행
    - \* 적발 시점이 행사 종료 이후라도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,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

## <붙임 1>

# 구매부추김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

---

---

1. 일반적으로 제품 구매에 따른 포인트 자동 적립 등을 제공한다는 광고
  - 예) 리워드,페이백,더블 적립 등
  - \* 다만, 사실상 고열량·저영양 또는 고카페인 식품을 구매할 때에만 포인트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구매를 부추기는 것으로 봄
2. 제품 구매 행위와 관련 없이 진행되는 행사 광고
  - 예) SNS 공유, 제품 관련 사진 공모 댓글 이벤트 등
  - \* 다만, 직접 광고에 구매사항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구매해야만 행사에 응모하여 경품을 받을 수 있다면 어린이 구매를 부추기는 것으로 봄
3.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거나 성인 대상으로 참여 대상을 명시하여 광고하는 경우
  - 예) 위 광고는 성인만 참여할 수 있는 광고입니다, 위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성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등
4. 제품 구매 시 제공하는 물품의 제한연령, 사용 대상자를 고려했을 시 명확히 성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
  - 예) 자동차, 주유상품권 등
5. 물건의 제공 목적이 정부정책 홍보 등 공익성이 있는 경우
  - 예) 식생활 개선캠프, 공익 캠페인 참여 기회 제공 등

<붙임 2>

## 구매부추김 광고 판별을 위한 흐름도

<p>① 소비자가 참여하여 경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홍보 목적인가?</p>	<p>아니오 단순 정보 제공 목적 (체험단 모집 공지, 신메뉴 소개 등)</p>	<p><b>구매부추김 광고 위반 아님</b></p>
<p>↓ 예</p>		
<p>②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·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구매와 연관된 행사·광고인가?</p>	<p>아니오 (홍보모델 인기투표, 에피소드, 제품사진 공모 댓글, SNS 공유 이벤트 등)</p>	
<p>↓ 예</p>		
<p>③ 어린이 참여 가능성이 있는 행사·광고인가?</p>	<p>아니오 성인만 대상 (성인에게만 행사내용 노출, 행사 참여 시 성인인증절차, 성인 대상 행사임을 공지 등)</p>	
<p>↓ 예</p>		
<p>④ 광고 경품으로 제공하는 물건에 식품이 아닌 것도 포함되어 있는가?</p>	<p>아니오 식품만 제공 (식품상품권, 시식권, 자사식품 추가 증정 등)</p>	
<p>↓ 예</p>		
<p>⑤ 물건의 제공 목적이 업체·제품홍보 등 영업의 일환인가?</p>	<p>아니오 정부정책 홍보 등 공익성이 있는 경우 (식생활 개선 캠프, 공익 캠페인 참여 기회 제공 등)</p>	
<p>↓ 예</p>		
<p>⑥ 제공하는 물건은 무료인가?</p>	<p>아니오 물품 수령 시 비용 지불 * 제세공과금 제외 (제품구매 시 특정제품 할인판매 또는 저렴한 가격 판매 등)</p>	
<p>↓ 예</p>		
<p>⑦ 광고에서 무료 제공한 물건이 어린이가 사용 가능한가?</p>	<p>아니오 성인만 사용 가능 (자동차, 주유상품권 등)</p>	
<p>↓ 예 (게임쿠폰, 연예인 브로마이드 등)</p>		
<p><b>구매부추김 광고 위반</b></p>		

	확인사항	사례	판별
1	광고가 단순 정보 제공인가?	체험단 모집 공지 신메뉴 소개 등	위반아님
	소비자가 참여하여 경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홍보목적인가?		2번으로
2	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·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구매와 관련 없이 진행되는 행사·광고인가?	홍보 모델 인기투표, 에피소드, 제품사진 공모 댓글, SNS 공유 이벤트 등	위반아님
	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·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구매와 연관된 행사·광고인가?		3번으로
3	성인 대상 행사광고인가?	성인에게만 행사내용노출 행사참여 시 성인인증절차 성인대상 행사임을 공지 등	위반아님
	어린이 참여 가능성이 있는 행사광고인가?		4번으로
4	광고 경품으로 제공하는 물건이 식품인가?	식품상품권, 시식권 자사식품 추가 증정 등	위반아님
	광고 경품으로 제공하는 물건에 식품이 아닌 것도 포함되어 있는가?		5번으로
5	물건의 제공 목적이 정부정책 홍보 등 공익성이 있는가?	식생활 개선캠프, 공익 캠프 페인 참여 기회 제공 등	위반아님
	물건의 제공 목적이 업체·제품홍보 등 영업의 일환인가?		6번으로

	확인사항	사례	판별
6	광고 행사 물건 획득을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? (경품 수령 시 제세공과금 제외)	제품구매 시, 특정제품 할인 판매 또는 저렴한 가격 판매 등	위반아님
	제공하는 광고 물건은 무료인가?		7번으로
7	광고에서 무료 제공한 물건이 어린이가 사용 가능한가?	현금카드, 모바일·문화·도서 상품권, 게임쿠폰, 연예인 브로마이드, 콘서트 입장권, 등	위반
	어린이가 사용 불가하거나 제약이 있는가?	자동차, 주유상품권 등	위반아님